

약관

노후설계 연금보험 1종(적립형) 보통보험 약관

제 1조 보험계약의 성립

-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험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도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청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같이 청약철회(請約撤回)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이하에서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또한, "가입시부터 연금지급 개시일의 전일까지"를 "제1보험기간",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종신연금형 및 상속연금형은 종신까지 확정연금형은 최종 연금 지급일까지"를 "제 2보험기간"이라 합니다.
-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에는 청약일(간강진 단을 받는 계약은 진단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로서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 그러나 15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제 2조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 ① 계약자는 다음에 정하는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하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합하여 "계약"이라 합니다)

1. 보장계약

제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상해등급 분류표"상의 1급 장해(이하 "고도의 장해(高度의 障害)"라 합니다) 또는 6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급여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2. 연금계약

계약 후 만 5년 이후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가 선택한 제 2보험기간의 연금지급 개시기부터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연금으로 지급받기 위하여 적립하는 계약
만, 연금지급 개시기는 연단위 계약해당일로 선택해야 합니다.

- (2) 계약자는 제 1항에서 정하는 보장계약 보험료와 연금계약 보험료를 합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하 "보장계약 보험료"와 "연금계약 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제 3조 계약의 효력

- (1)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 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끝냈을 때) 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 (2) 회사가 청약시에 제 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제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끝냈을 때)로 소급(追溯)하여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제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끝냈을 때) 현재, 피보험자가 이 계약의 적격도로 적격(適格)인 險體가 아님을 회사가 입증(要證)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가지 아니합니다.

- (3) 제 2항의 후단(後段)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호에 정하는 "상이" 되는 불의의 사고 (이하 "특약"라 합니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특약에 해당하는 특약으로서 특약에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른 책임(피보험자의 직업이 위험한 직종으로서 가입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을 집니다.

④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고도의 장해상태(단, 제 2보험기간중 고도의 장해시
는 제외)가 된 경우에는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4조 계약 불성립시의 보험료 반환

- ① 회사가 제 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반환합니다. 이 경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금융기관
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율(이하 "정기예금 금리"라 합니다)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드립니다.
- ② 건강 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자가 청약서에 제 1회 보
험료를 납입하고 청약일 또는 제 1회 보험료 영수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청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청약철회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받은 금액을 반환합니다.
이 경우 반환 지급기일을 경과하는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정기예금
금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드립니다.

제 5조 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
니다.

② 제 1항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
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
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제 6조 계약의 무효

①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18세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② 제 1항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제 7조 보험금 지급사유

① 회사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가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제 1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고도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 사망급여금 또는 고도 장해급여금과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일시에 지급
2. 제 1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거나 고도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재해사망급여금 또는 재해 고도장해급여금과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일시에 지급
3. 제 1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 분류표"상의 2급 내지 6급 장해 (이하 "장해"라 한다) 다) 상태가 되었을 때 : 장해급여금을 지급
4. 제 2보험기간의 연금지급일에 살아있을 때 : 인금지급 장마에 따라 미는 생존연금을 지급

② 제 1항 제 1호 및 제 2호의 경우 생사불명한 경우로서 실종신고(失蹤
宣告)를 받았거나 회사가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제 1항 제 1호 내지 제 3호의 경우 고도의 장해 또는 장해상태가 확정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 현재상태의 진단을 기준으
로 고도의 장해 또는 장해상태 여부를 결정합니다.

④ 제 1항 제 3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중에 두 종목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 그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금
액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 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금액만을 드립니다.

⑤ 제 4항에 규정한 장해금액의 지급사유가 다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2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금액을 수익
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장해금액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장해일 때
에는 새로이 발생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금액
을 감한 차액을 드립니다.

⑥ 제 4항에 있어서 그 재해전에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
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도 다시 제 5항에 규정하는 장
해상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하여
는 이미 장해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 5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이 보험의 책임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
로 장해금액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제 1호 이외에 이 보험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금액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장해금액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⑦ 제 1항 제 4호의 경우 회사의 송낙을 얻어 생존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생존연금 지급개시일에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 8조 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익금이 발생한 때에는 별도로 재무부 장관이 인가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에게 이익배당금을 드립니다.

제 9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회사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고도의 장해 또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또는 부활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자살하거나 스스로 자신을 해침으로써 고도의 장해 또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고도의 장해 또는 장해상태가 되게 하였을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고도의 장해 또는 장해상태가 되게 하였을 경우

② 회사는 제 1항 제 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제 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그러나 제 1항 제 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도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제 10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고도의 장해 또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의 총드간 경향을 미칠 우려

가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재무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립니다.

제 11조 가입자가 회사에 계약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단체로 가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직장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서 사본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 1항의 질문사항을 알리지 아니하였거나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解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때에는 그려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는 때
3. 회사가 그 사실을 안날로 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지났을 때

③ 제 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된 후 해지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해약환급금 중에서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 12조 보험료의 납입

① 제 2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간중 계약자가 이 계약의 수급능력에 따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발행한 양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 ②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문서로 보험료의 수금방법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사는 그 방법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 ③ 보험료를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보험료는 당월분을 포함하여 12개월분 이하의 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며, 선납보험료는 약정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 13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 7조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14조 주소 변경 통지

-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자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 1항의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 15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계약의 효력

- ① 제 2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일로 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이하 「유예기간(猶豫期間)」이라 합니다)으로 하며, 계약자가 유예기간이 끝날때까지 보험료를 납입치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 ② 회사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계약자에게 우예기간이 끝나기 10일 이전까지 반드시 서면으로 제 1항의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계약은 계속 효력을 가집니다.

③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수금불이행 또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 1항 및 제 2항의 규
정에 불구하고 제 1항의 납입기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 계약은
계속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재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
로 하여 제 1항 및 제 2항을 적용합니다.

제 16조 효력상실된 계약의 부활

① 계약이 효력상실(效力喪失) 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효력상실일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復活)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하였을 때에는 회사가 지정한 날까지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
다.

②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 송낙거절시의 보험료 반환 및 회사에 알리
야 할 의무는 제 1조 제 2항, 제 3조, 제 4조 및 제 11조의 규정을 준용합
니다.

제 17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카드 (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주관하는 서류

제 18조 보험금 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 17조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연금, 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급여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드립니다.
- ② 회사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연금, 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대출이율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연금, 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에 가산하여 드립니다.
- ③ 제 7조 제 1항 제 1호 및 제 2호의 경우에 당해년도의 미납입보험료가 있어도 이를 지급할 급여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 ④ 이 약관에 의한 해약환급금 (제 9조 제 2항, 제 11조 제 3항, 제 15조 제 1항, 제 20조 제 2항 및 제 21조)은 이 계약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별표 4 "해약환급금 예시표" 참조)

제 19조 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 7조 제 1항 제 1호 및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사망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 18조 규정에 의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이외에 다른 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지급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정기예금 금리로 부과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미지급기간이 1년미만인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해당기간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합니다.

제 20조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背書)하여 드립니다.

1. 납입보험료

2. 계약자 또는 수익자

3. 기타 계약의 내용

② 연금의 지급개시전에 회사는 계약자가 제 1항 제 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면,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 18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③ 계약자가 제 1항 제 2호 중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

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 21조 계약자의 임의 해지

계약자는 생존연금의 지급개시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청약시까지 이 약관을 고부받

지 못한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드립니다.

제 22조 계약자 대출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

증권을 제출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23조 분쟁의 조정

이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

는 한국보험공사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보험분쟁심의위원회의 실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24조 관할 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 25조 보험증권의 재고부 등

회사는 계약자에 대하여 무료로 보험증권의 정정, 배서, 재고부 등을 해드립니다.

제 26조 준 거 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보장기간	구 分	지 금 액															
제 1보험 기 간 중	책임준비금 (약관 제 7조 제 1항 제 1호 및 제 2호)	이 계약의 연금계약 순보험료를 정기예금 금리에 연동한 이율(정기예금 금리 + 2%)로 납입일로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부리 적립한 금액															
	사망급여금 또는 고도 장애급여금 (약관 제 7조 제 1항 제 1호)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월 보험료</th> <th>보장금액</th> </tr> </thead> <tbody> <tr> <td>1 형</td> <td>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td> <td>250 만원</td> </tr> <tr> <td>2 형</td> <td>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td> <td>200 만원</td> </tr> <tr> <td>3 형</td> <td>2만원 초과 5만원 이하</td> <td>150 만원</td> </tr> <tr> <td>4 형</td> <td>2 만 원</td> <td>100 만원</td> </tr> </tbody> </table>	구 분	월 보험료	보장금액	1 형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250 만원	2 형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200 만원	3 형	2만원 초과 5만원 이하	150 만원	4 형	2 만 원	100 만원
구 분	월 보험료	보장금액															
1 형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250 만원															
2 형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200 만원															
3 형	2만원 초과 5만원 이하	150 만원															
4 형	2 만 원	100 만원															
	재해사망급여금 또는 재해 고도장애급여금 (약관 제 7조 제 1항 제 2호)	500 만원															
	장 해 급 여 금 (약관 제 7조 제 1항 제 3호)	<table border="1"> <thead> <tr> <th>장해등급</th> <th>2 급</th> <th>3 급</th> <th>4 급</th> <th>5 급</th> <th>6 급</th> </tr> </thead> <tbody> <tr> <td>지 금 액</td> <td>350 만원</td> <td>250 만원</td> <td>150 만원</td> <td>75 만원</td> <td>50 만원</td> </tr> </tbody> </table>	장해등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지 금 액	350 만원	250 만원	150 만원	75 만원	50 만원			
장해등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지 금 액	350 만원	250 만원	150 만원	75 만원	50 만원												
제 2보험 기 간 중	생 존 연 금 (약관 제 7조 제 1항 제 4호)	<o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신연금형 연금지급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생존연금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지급 확정연금형 연금지급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에 따라 계산한 확정연금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지급 상속연금형 책임준비금을 정기예금 금리 + 2%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연금으로 매년 계약 해당일에 지급 (단, 사망시에는 사망 시점 의 책임준비금을 지급) 															

다만,

1.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후 10회의 보증지급기간안에 사망 시에는 10회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일에 드립니다.
2. 확정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후 10회, 15회, 20회 각각의 보증 지급기간안에 사망시에는 각각 10회, 15회, 20회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 을 연금지급일에 드립니다.
3. 보증지급기간안에 해당되는 연금액은 회사의 송악을 얻어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4.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정기예금 금리 + 2%로 월, 3개월, 6개월 이율로 부여한 이자를 가산하여 드립니다.

(별표2)

대상이 되는 불의의 사고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경제기획원 고시 제30호, 1979. 1. 1. 시행)에 의한 것임.

분류 목록

분 류 항 목	분 류 번 호
1. 출도사고	E 800 - E 807
2. 자동차 교통사고	E 810 - E 819
3. 자동차 비교통 사고	E 820 - E 825
4. 기타 도로교통기관 사고	E 826 - E 829
5. 수상 교통 기관 사고	E 830 - E 838
6. 항공기 및 우주교통기관 사고	E 840 - E 845
7.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	E 850 - E 858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① 의용약 또는 약물 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 등	
② 질병의 진단, 치료의 목적	
8. 기타의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	E 860 - E 869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① 세제, 유지 및 구리스, 용제, 기타 화학물질 접촉에 의한 피부염	
② 살모넬라 (Salmonella) 성 식중독	
③ 세균성(포도구균성, Botulinus균성) 기타 원인불명의 세균성 식중독	
④ 알레르기성, 식이성(음식물에 의함) 또는 중독성 위장염이거나 대장염	
9. 불의의 주력	E 880 - E 888
10. 화재 및 화염에 의한 불의의 사고	E 890 - E 899
11.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E 900 - E 909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① 과도의 고온 및 저온	(E 900 - E 901)
② 고기압, 저기압 및 기압의 변화	(E 902)
③ 여행 및 운동	(E 903)
④ 금주법, 갈증, 높은환경 노출 및 방치증의 금주법, 갈증	(E 904)
12. 기타 불의의 사고	E 910 - E 929

<p>다음 사항은 제외한다.</p> <p>① 과로 및 격렬한 운동</p> <p>13. 점수, 절식 및 아물에 의한 병의의 사고</p> <p>다음 사항은 제외한다.</p> <p>①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삼킬장애 또는 정신 신경장해 상태가 있는 사람의 음식을 흡입 또는 삼킴이 의한 막힘 및 절식</p> <p>② 기타 물체의 흡입 또는 삼킴에 의한 악행 및 절식</p> <p>14.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p> <p>다음 사항은 제외한다.</p> <p>① 질병의 진단목적</p> <p>② 질병의 치료목적</p> <p>15. 타살 및 타인의 가해에 의한 상해</p> <p>16. 법적개입(다만 “처형은 제외한다”)</p> <p>17. 전증행위에 의한 상해</p> <p>18.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종에 규정한 질병</p>	<p>(E 927) E 910 - E 915</p> <p>(E 912) E 870 - E 876</p> <p>E 960 - E 969 E 970 - E 973 E 990 - E 999</p>
--	--

(별표3) 장해등급분류표

등급	신체장애
제 1 급	1. 두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팔의 손목 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8. 한팔의 손목 이상을 잃고,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고, 한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 2 급	1. 한팔 및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2.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3. 한팔 또는 한다리중에서 제3급 2부터 7까지 중의 신체장애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부터 7까지 중 또는 제4급의 5부터 11까지 중에서 신체장애가 발생되었을 때 4. 두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제 3 급	1. 한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3. 한팔 또는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5.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7.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9.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 4 급	1. 두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동작에 지장을 받게 되었을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기고 평생 일상생활 동작에 지장을 받을 때 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각각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 4 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다리가 영구히 5cm 이상 단축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9.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중 적어도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10. 한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2. 10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3. 한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제 5 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4.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 5.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6.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발의 5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두커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9. 한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10. 코가 결손되고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 6 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다리가 영구히 3cm 이상 단축되었을 때 4.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또는 3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었을 때 8. 한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9.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장애등급 분류해설>

1. “평생간호”

항상 타인의 간호없이는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2. “일상생활 동작외제한”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타인의 간호는 필요하지 않으나, 평생토록 일상생활 동작에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시력을 잃은것”

시력이 0.02이하(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4. “시력의 뚜렷한 장해”

시력이 0.06이하(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5.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것”

가. “말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것” 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2)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애로서 구순음(ㅁ,ㅂ,ㅍ), 치설음(ㄴ,ㄷ,ㅌ), 구개음(ㅈ,ㅊ)
후두음(ㆁ,ㆁ)중 3종류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2) 뇌언어증후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3) 성대 전부를 데어냄으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것”

풀이나 유통식(미음등)이외의 것은 섭취할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
우를 말한다.

6.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해”

가. “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것”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애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중 2종류 이상
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나.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것”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
한 경우를 말한다.

7.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것”

주파수 500, 1000, 2000, 4000㎐의 경우에 청력상실의 정도를 각각 a, b, c, d “시청
(청력검사단위)로 표출되며 $\frac{1}{G}(a+2b+2c+d)$ 의 값이 80㏈이상(청력검사단위)이상(부
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8. “청력의 뚜렷한 장해”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이상(청력검사단위)이상 (40cm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소
말소리를 헤黠하지 못하는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9. “코의 결손과 뚜렷한 장해”

코뼈의 1/2이상이 결손된 경우로서 양코로 숨쉬는 것이 불안하거나 죽는 것
없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0. “聩다뇨 … 와서 영…히 사용하지 못하는것”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운동 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팔은 어깨관절, 팔목, 손목, 다리는 굽반관절, 무릎, 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수없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11. “팔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해”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생리적운동 영역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12.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애”

가. “척추의 뚜렷한 기형”

봉상의 외복을 착용하여도 외부로부터 보아서 확실히 알수 있는 정도 이상의 것을 말한다.

나.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애”

목뼈가 완전 강직된 경우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하기, 좌우굽하기 및 좌우회전운동 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이하로 세한된 경우를 말한다.

13. “손가락의 장해”

가. “손가락을 잃은 것”

첫째손가락은 지질간관절,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질간관절 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손가락의 원위시절간 관절(첫째손가락은 말질골의 1/2)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손가락의 중수지질관절 또는 근위지질간관절(첫째손가락은 지질간관절)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4. “발가락의 장해”

가. “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첫째발가락은 말질골의 1/2이상, 그외 발가락은 원위지질간관절이상을 잃은 경우거나 중족지질관절 또는 근위지질간관절(첫째발가락은 지질간관절)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5. 신체의 동일부위

가. 한쪽에 대하여는 어깨관절이하(손가락, 손목이하, 팔꿈치이하, 어깨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나. 한다리에 대하여는 굽반관절이하(발가락, 발목이하, 무릎이하, 굽반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장해에 대하여는 두눈 또는 두귀를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라. 치주에 대하여는 목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마. 승태동급분류표중 제 1급의 5, 6, 7, 8, 9, 세 2급의 1, 2, 3, 세 3급의 8번과 9번, 4급의 12의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갑, 누나리, 관갑과 한나리, 104-기-155, 156 가죽을 쓰자 동일부위라 한다.

(별표 4)

해 약 환 급 금 예 시 표

월납입 보험료 : 20,000원
기준(정기예금금리) : 10%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1 개월	20,000	0
2 개월	40,000	0
3 개월	60,000	8,512
1년	240,000	162,256
2년	480,000	387,823
3년	720,000	639,497
4년	960,000	920,413
5년	1,200,000	1,234,079
6년	1,440,000	1,586,648
7년	1,680,000	1,981,526
8년	1,920,000	2,423,789
9년	2,160,000	2,919,124
10년	2,400,000	3,473,899

노후설계 연금보험 2종(기초형) 보통보험 약관

제 1조 보험계약의 성립

-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험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도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청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같이 청약철회(請約撤回)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이하에서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또한, "가입시부터 연금지급 개시일의 전일 까지"를 "제1보험기간",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종신연금형 및 상속연금형은 종신까지 확정연금형은 최종 연금 지급일까지"를 "제 2보험기간"이라 합니다.
-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를 받은 때에는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은 진단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로서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 그러나 15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제 2조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 ① 계약자는 다음에 정하는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하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합하여 "계약"이라 합니다)
1. 보장계약
- 제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 분류표"상의 1급 장해(이하 "고도의 장해(高度의 障害)"라 합니다) 내지 6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급여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2. 연금계약

계약 후 만 3년 이후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가 선택한 제 2보험기간의 연금지급 개시기부터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연금으로 지급받기 위하여 적용하는 계약

단, 연금지급 개시기는 연단위 계약해당일로 선택해야 합니다.

- ② 계약자는 제 1항에서 정하는 보장계약 보험료와 연금계약보험료를 합하여 일시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하 '보장계약 보험료'와 '연금계약 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제 3조 계약의 효력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받은 때(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끝냈을 때) 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가 청약시에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험료를 납입한 날(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끝냈을 때)로 소급(追溯及)하여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보험료를 납입한 날(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끝냈을 때) 현재, 피보험자가 이 계약의 적격피보험체(適格被保險體/良體被保險體)가 아님을 회사가 입증(立證)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③ 제 2항의 후단(後段)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에서 정하는 '대상이 되는 불의의 사고'(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적격피보험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른 책임(피보험자의 직업이 위험한 직종으로서 가입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을 집니다.

- ④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고도의 장해상태(단, 차 2보험기간 중 고도의 장해시는 제외)가 된 경우에는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4조 계약 불성립시의 보험료 반환

- ① 회사가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동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반환합니다. 이 경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율(이하 「정기예금 금리」라 합니다)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드립니다.
- ② 건강 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자가 청약서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청약일 또는 보험료 영수증을 발급받는 날로 부터 청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청약철회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받은 금액을 반환합니다. 이 경우 반환 지급기일을 경과하는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정기예금 금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드립니다.

제 5조 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제 1항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기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제 6조 계약의 무효

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1. 아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18세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② 제 1항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제 7조 보험금 지급사유

① 회사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가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제 1보험기간 중 사망하였거나 고도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사망금 여금 또는 고도장해급여금과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일시에 지급
2. 제 1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 분류표' 상의 2급 내지 6급 장해 (이하 '장해'라 합니다)상태가 되었을 때 : 장해급여금을 지급
3. 제 2 보험기간의 연금지급일에 살아있을 때 : 연금지급 형태에 따르 매년 생존연금을 지급

② 제 1항 제 1호의 경우 생사불명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蹤宣告)를 받았거나 회사가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제 1항 제 1호 및 제 2호의 경우 고도의 장해 또는 장해상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 현재상태의 진단을 기준으로 고도의 장해 또는 장해상태 여부를 결정합니다.

④ 제 1항 제 2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중에 두 종목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 그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금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 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금여금만을 드립니다.

⑤ 제 4항에 규정한 장해금여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2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금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장해금여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장해일 때에는 새로운 발생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금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금여금을 감한 차액을 드립니다.

⑥ 제 4항에 있어서 그 재해전에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 다시 제 5항에 규정하는 장해상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하여는 이미 장해금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 5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이 보험의 책임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장해금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제 1호 이외에 이 보험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금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장해금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⑦ 제 1항 제 3호의 경우 회사의 승낙을 얻어 생존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생존연금 지급개시일에 일시에 지급 할
수 있음을니다.

제 8조 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익금이 발생한 때에는 별도로 재무부 장관이 인가한 방법에 따라 계
약자에게 이익배당금을 드립니다.

제 9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회사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고도의 장해
또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또는 부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살하거나 스스로
자신을 해침으로써 고도의 장해 또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고도의 장해 또는 장해상태
가 되게 하였을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고도의 장해 또는 장해상
태가 되게 하였을 경우

② 회사는 제 1항 제 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제 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그러나 제 1항 제 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도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제 10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고도의 장해 또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비율 미칠 우려

가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재무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립니다.

제 11조 가입자가 회사에 계약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단체로 가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직장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서 사본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 1항의 질문사항을 알리지 아니하였거나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解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는 때
3. 회사가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기준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지났을 때

③ 제 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된 후 해지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해약환급금 중에서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 12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동지

수익자는 제 7조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손해 발생일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13조 주소 변경 통지

-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 1항의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 14조 보험금 등 청구서 구비서류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암식)
2. 사고증명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 (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 15조 보험금 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 14조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연금, 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급여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드립니다.
- ② 회사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연금, 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대출이율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연금, 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에 가산하여 드립니다.

③ 이 약관에 의한 해약환급금(제 9조 제 2항, 제 11조 제 3항, 제 17조 제 2항 및 제 18조)은 이 계약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하여 경과기간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때,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정기예금 금리, 2년 이내에는 정기예금 금리 +1%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별표 4 「해약환급금 예시표」 참조)

제 16조 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 7조 제 1항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사망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 15조 규정에 의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이외에 다른 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지급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정기예금 금리로 부과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미지급기간이 1년미만인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해당기간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합니다.

제 17조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송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송낙을 서면으로 알비거나 보험증권에 배서(背書)하여 드립니다.

1. 납입보험료
2. 계약자 또는 수익자
3. 기타 계약의 내용

② 연금의 지급개시전에 회사는 계약자가 제 1항 제 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보험료를 감액 또는 증액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 또는 증액시킬 수 있으며, 납입보험료를 감액한 경우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를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 15조 제 3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제 1항 제 2호 중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 18조 계약자의 임의 해지

계약자는 생존연금의 지급개시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청약시까지 이 약관을 교부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드립니다.

제 19조 계약자 대출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증권을 제출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20조 분쟁의 조정

이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한국보험공사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보험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21조 관할 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 22조 보험증권의 재교부 등

회사는 계약자에 대하여 무료로 보험증권의 정정, 배서, 재교부 등을 해드립니다.

제 23조 준 거 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보장기간	구 分	지 급 액																		
제 1보험 기간중	책임준비금 (약관 제 7조 제 1항 제 1호)	이 계약의 연금계약 손보험료를 정기예금금리 에 연동한 이율(정기예금 금리 +2%)로 납입일 로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부과 적립한 금액																		
	사망급여금 또는 고도장해 급여금 (약관 제7조 제 1항 제 1호)	납입 보험료의 10 % 해당액																		
	장해금여금(약관 제7조 제1항 제 2호)	<table border="1"> <thead> <tr> <th>장해등급</th> <th>2 급</th> <th>3 급</th> <th>4 급</th> <th>5 급</th> <th>6 급</th> </tr> </thead> <tbody> <tr> <td>(납입 보험료의)</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지급액</td> <td>7 %</td> <td>5 %</td> <td>3 %</td> <td>1.5%</td> <td>1 %</td> </tr> </tbody> </table>	장해등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납입 보험료의)						지급액	7 %	5 %	3 %	1.5%	1 %
장해등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납입 보험료의)																				
지급액	7 %	5 %	3 %	1.5%	1 %															
제 2보험 기간중	생존연금(약관 제 7조 제 1항 제 3호)	<p>1. 종신연금형 연금지급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생존연금을 다른 계약해당일에 지급</p> <p>2. 확정연금형 연금지급개시시의 초일준비금을 기준으로 연금지급 기간(10년, 15년, 20년)에 따라 계산한 확정연금을 다른 계약해당일에 지급</p> <p>3. 상속연금형 책임준비금을 정기예금 금리 + 2%에 의 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연금으로 다른 계약 해당일에 지급 (단, 상속자는 사망 시점 의 죽음금을 치는</p>																		

- 다만, 1.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후 10회의 보증지급기간 안에 사망시에는 10회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 지급일에 드립니다.
2. 확정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후 10회, 15회, 20회 각각의 보증지급기간 안에 사망시에는 각각 10회, 15회, 20회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일에 드립니다.
3. 보증지급기간안에 해당되는 연금액은 회사의 승낙을 얻어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4.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정기예금 금리 + 2%로 월, 3개월, 6개월 이율로 부과한 이자를 가산하여 드립니다.

(별표2)

대상이 되는 불의의 사고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인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경계기획원 고시 제30호, 1979. 1. 1. 시행)에 의한 것임.

분류 훈 목

분 류 항 목	분 류 번 호
1. 절도사고	E 800 - E 807
2. 자동차 교통사고	E 810 - E 819
3. 자동차 비교통 사고	E 820 - E 825
4. 기타 도로교통기관 사고	E 826 - E 829
5. 수상 교통 기관 사고	E 830 - E 838
6. 항공기 및 우주교통기관 사고	E 840 - E 845
7.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	E 850 - E 858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① 외용약 또는 약물 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 등	
② 질병의 진단, 치료의 목적	
8. 기타의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	E 860 - E 869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① 세제, 유지 및 구리스, 용제, 기타 화학물질 접촉에 의한 표 부염	
② 살모넬라 (Salmonella) 성 식품독	
③ 세균성(도도구균성, Botulinus균성) 기타 원인불명의 세균성 식중독	
④ 알레르기성, 식이성(음식물에 의함) 또는 종독성 위장염이거 나 대장염	E 880 - E 889
9. 불의의 주목	
10. 화재 및 화염에 의한 불의의 사고	E 890 - E 899
11.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E 900 - E 909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① 과도의 고온 및 저온	E 910 - E 919
② 고기압, 저기압 및 기압의 변화	E 920,
③ 여행 및 운동	E 930,
④ 끓주림, 갈증, 물통환경 노출 및 방치증의 끓주림, 갈증	E 940
12. 기타 불의의 사고	E 950 - E 959

<p>다음 사항은 제외한다.</p> <p>① 파로 및 격렬한 운동</p> <p>13. 절수, 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p> <p>①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삼킬장해 또는 정신 신경장해 상태가 있는 사람의 음식을 흡입 또는 삼킬에 의한 막힘 및 절식</p> <p>② 기타 물체의 흡입 또는 삼킬에 의한 막힘 및 절식</p> <p>14.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p> <p>① 질병의 진단목적</p> <p>② 질병의 치료목적</p> <p>15. 타살 및 타인의 가해에 의한 상해</p> <p>16. 법적개임(다만 "처형은 제외한다")</p> <p>17. 전정행위에 의한 상해</p> <p>18. 전암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종에 규정한 질병</p>	<p>(E 927)</p> <p>E 910 – E 915</p> <p>(E 912)</p> <p>E 870 – E 876</p> <p>E 960 – E 969</p> <p>E 970 – E 978</p> <p>E 990 – E 999</p>
--	--

(별표3) 장 해 통 금 표 류 표

통 금	신 체 장 해
제 1 금	1. 두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증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8. 한팔의 손목 이상을 잃고,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고, 한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 2 금	1. 한팔 및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2.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3. 한팔 또는 한다리중에서 제3급 2부터 7까지 중의 신체장애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부터 7까지중 또는 제4급의 5부터 11까지 중에서 신체장애가 발생되었을 때 4. 두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제 3 금	1. 한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3. 한팔 또는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거나 되었을 때 4. 한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5.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7. 짓짜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9.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 4 금	1. 두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중증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활동에 차질을 막기 되었을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활동에 차질을 막을 때 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 4 급	<p>6. 한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다리가 영구히 5cm 이상 단축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9.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중 적어도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10. 한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2. 10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3. 한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p>
제 5 급	<p>1. 한팔의 3대관절 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한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4.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 5.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6.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발의 5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두귀의 정력을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9. 한귀의 정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10. 코가 결손되고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p>
제 6 급	<p>1. 한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한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다리가 영구히 3cm 이상 단축되었을 때 4.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또는 3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었을 때 8. 한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9.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장애등급 분류해설>

1. “평생간호”

항상 타인의 간호없이는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2. “일상생활 동작의 제한”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타인의 간호는 필요하지 않으나, 평생토록 일상생활 동작에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시력을 잃은것”

시력이 0.02이하(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눈씩 고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4. “시력의 뚜렷한 장해”

시력이 0.06이하(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눈씩 고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5.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것”

가. “말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것” 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애로서 구순음(ㅁ,ㅂ,ㅍ), 치설음(ㄴ,ㄷ,ㅌ), 구개음(ㅈ,ㅊ)
후두음(ㅇ,ㅎ) 중 3종류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2) 뇌언어증후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3) 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것”

물이나 유동식(미음동)이외의 것은 섭취할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6.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해”

가. “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것”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애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 중 2종류 이상
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나.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것”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
한 경우를 말한다.

7.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것”

주파수 500, 1000, 2000, 4000㎐의 경우에 청력상실의 정도를 각각 a, b, c, d 대시별
(청력검사단위)로 엮음과 $1/(a+2b+2c+d)$ 의 값이 80대시별(청력검사단위)이상(즉
전에 겹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8. “청력의 뚜렷한 장해”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50대시별(청력검사단위)이상 (40cm이상의 거리에서 노년의
단소리를 해독하기 못하는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9. “코의 결손과 뚜렷한 장해”

코뼈의 1/2이상이 절손된 경으로서 양코로 숨쉬는 것이 곤란하거나 다른 이상기능을
일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0. “장다리 혹은 외신 영·소화 사용하지 못하는 것”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운동 마비 또는 반다리 각각의 3대관절(팔은 어깨관절, 팔목, 손목, 다리는 허반관절, 무릎, 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끌수없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11. “팔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해”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의 운동기능 영역이 생리적운동 영역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12.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애”

가. “척추의 뚜렷한 기형”

동상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외부로부터 보아서 확실히 알수 있는 정도 이상의 것을 말한다.

나.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애”

목뼈가 완전 강직된 경우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하기, 좌우굽하기 및 좌우회전운동 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13. “손가락의 장해”

가. “손가락을 잃은 것”

첫째손가락은 기절간관절,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질간관절 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손가락의 원위지질간관절(첫째손가락은 말걸골의 1/2)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손가락의 중수지질관절 또는 근위지질간관절(첫째손가락은 지질간관절)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4. “발가락의 장해”

가. “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첫째발가락은 말걸골의 1/2이상, 그외 발가락은 원위지질간관절이상을 잃은 경우거나 중수지질관절 또는 근위지질간관절(첫째발가락은 기질간관성)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5. 신체의 동일부위

가. 한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이하(손가락, 손목이하, 팔꿈치이하, 어깨이하)를 고루 동일부위라 한다.

나. 한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이하(발가락, 발목이하, 무릎이하, 속반이하)를 고루 동일부위라 한다.

다. 또는 두의 장애에 대하여는 두눈 또는 두귀를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마. 강회동급는유표축 제 1급의 5, 6, 7, 8, 9, 제 2급의 1, 2, 3, 제 3 구의 8, 9, 제 4 구의 12의 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팔, 두다리, 한팔과 한다리, 10구 상자 12구 시락을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별표 4)

해 약 환 급 금 예 시 표

일시납보험료 : 2,000,000원
기준(정기예금금리) : 10%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1년	2,000,000	2,002,000
2년	2,000,000	2,220,222
3년	2,000,000	2,509,481
4년	2,000,000	2,788,219
5년	2,000,000	3,100,405
6년	2,000,000	3,450,054
7년	2,000,000	3,841,660
8년	2,000,000	4,280,259
9년	2,000,000	4,771,490
10년	2,000,000	5,321,659

신체부위설명도

